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0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한정애·박지원·김영배

김현정 · 정성호 · 부승찬

김주영 • 민형배 • 주철현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지방자치단체가"를 "지방자치단체의"로, "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"를 "외교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(이하 이 조에서 "전담부서"라 한다)를 둘 수 있고"로, "지원을"을 "행정적 지원을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지원"을 "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제9조(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제9조(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지방 에 대한 지원) ① -----지방 자치단<u>체의</u>-----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-----<u>외교부에 관</u>련 업무를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<u>에</u> 필요한 <u>지원을</u> 할 수 있다. 전담하는 부서(이하 이 조에서 "전담부서"라 한다)를 둘 수 있 고----행정적 지원을----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(3) -----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담부서 설치 및 지원----으로 정한다.